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9 장 주임교수와 지도교수

제40조(주임교수) ①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각 학과에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주임교수를 두어 학사업무 및 연구업무를 총괄한다.

②학생의 학사 및 연구 지도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어 대학원생의 제반 활동을 지도하게 한다.

제41조(지도교수)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,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②지도교수는 학생의 과정이수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로부터 학위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생활과 학문연구를 지도한다.

③학생의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논문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규정은 「논문지도비 규정」으로 정한다.